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1일, 이해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4.17.) 상정, 심사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6.27.) 상정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2025.7.2.)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7.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민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는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 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증원 및 추천주체 변경·확대

- O 이사 선임권한을 방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 이사 추천주체의 확대 등은 민주적 정당성, 정치후견주의의 탈피 및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 등 여러 가치에 기반한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 정수 증원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② 사장후보추천위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 기존에 사장후보추천위 구성방식이나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 대한 국회 논의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현행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대립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③ 이사·사장의 신분보장,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

- 이사나 사장 등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해임을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재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이사 및 임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금지사항을 포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소지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한민수의원, 이훈기의원, 최민희의원, 황정아의원, 박민규의원, 노종면의원, 조인철의원, 김현의원, 이해민의원, 이정헌의원, 김우영의원, 서영교의원, 신장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o 사실상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구조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이사 추천을 국회, 시민사회, 현직 직원 등으로 다원화해 공영 방송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조임(김현·이훈기·노종면·한민수위원). 정권에 따라 바뀌는 방송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최민희·한민수 위원)
- o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의 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등으로 특정 세력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함(김혂·이훈기 위원)
- o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로 경영진과 정치 권의 개입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김현·노종면·이정헌 위원).

- o 노조·시민단체 몫 이사 비중이 과도해 사실상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이 공 영방송을 장악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박정훈·김장겸·이상휘·최수진 위원).
- o 임직원과 시민사회 등의 이사 추천은 국민이 위임한 기구가 아니므로 대의원칙에 위배됨. 또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강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으로 방송사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와 헌법상 방송편성의 자유를 위반할 위험(최형두·김장겸 위원).
- o 정파적 다툼이 방송 이사회로 직접 유입되고 오히려 정치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신성범 위원).
- o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법개정 추진, 충분한 숙의와 협의가 부재 하였음(최형두·이상휘 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찬성 11, 반대 3)

8. 기타 사항

소위 공청회 개최(2025.5.9.)